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2-1160호

신평1·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해제(안) 공람·공고

건설부 고시 제51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('90.08.20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66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('91.03.05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27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'94.11.0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-261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('95.10.16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8-40호로 주거환경 개선정비계획 변경('08.10.29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3-34호로 주거 환경개선정비계획 변경('13.04.10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5-15호로 주 거환경개선정비계획 변경('15.03.11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108호로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변경('22.08.10.)된 사하구 신평동 111-1번지(신평시장 일원) 일원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과 건설부 고시 제395호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('91.07.22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-378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('92.10.24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-1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'94.01.13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-30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('94.02.08.)된 사하구 신평동 11번지 일원(동아주택 동측 일원) 신평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)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8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1. **공람기간** : 2022. 09. 28. ~ 2022. 10. 28. (31일)

2. **공람장소**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축과 [☎ 051)220-4614]

3. **공람내용** : 신평1·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해제(안)

가.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

지정 구분	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고
해제	**주거환경 개선사업**	신평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	사하구 신평동 111-1번지 일원 (신평시장 일원)	118,796	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따른 해제

나. 신평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

지정 구분	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고
해제	**주거환경 개선사업**	신평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	사하구 신평동 11번지 일원 (동아주택 동측 일원)	7,905	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따른 해제

다. 해제사유 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)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

4. **공람도서**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5. **의견제출처** : 사하구청 건축과(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)